

# 충청북도 주택 조례안

의안 번호	21
----------	----

제출연월일 : 2006년 8월 28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이유

- 주택법에서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고,
- 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주택종합계획 수립 (안 제2조)

- 주택종합계획을 연도별, 10년 단위로 구분하여 수립

나.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안 제3조 내지 제11조)

- 구성 : 15인 이내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 기능 : 주요 주택정책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3. 의안전문 : 불 임

4. 관계법령 발취 : 불 임

# 충청북도 주택 조례안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제2조(주택종합계획의 수립)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10년 단위의 주택종합계획 및 연도별 주택종합계획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10년 단위의 주택종합계획

가. 주택종합계획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

나. 주택시장의 현황 및 전망

다. 주택의 형별·규모별·점유유형별 수요 전망

라. 주거수준의 목표

마. 제2호 각 목의 사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경우에는 10년 단위의 계획을 말한다)에 대한 추진계획

바. 저소득층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

사. 그 밖에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2. 연도별 주택종합계획

가. 주택 및 택지의 현황

나. 다음 연도의 주택건설계획

다. 다음 연도의 택지수급계획

라. 주택자금 조달계획 및 투자계획

- 마. 주택건설 자재의 수급계획
- 바. 저소득층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
- 사. 주택의 개량 및 리모델링 추진계획
- 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사업 추진계획
- 자. 그 밖에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장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제3조(주택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주택종합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주택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주택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설담당 국장
2.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2인 이내
3. 주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0인 이내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주요 주택정책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충청북도 주택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택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임기) ①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공무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8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이는 건축문화과장으로 한다.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충청북도각종위원회 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4장 보 칙

제13조(과태료의 징수) 「주택법 시행령」 제1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충청북도 도세 부과징수 규칙」의 예에 의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발췌

## □ 주택법

제7조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택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주택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국민주택·임대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주택·택지의 수요·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주택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저소득자·무주택자 등 주거복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주택지원에 관한 사항
6.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주거환경의 조성 및 정비에 관한 사항
7. 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②주택종합계획은 연도별 계획과 10년 단위의 계획으로 구분하며, 연도별 계획은 10년 단위의 계획을 토대로 당해 연도 2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③주택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인 사업주체는 주택종합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3>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주택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소관별 계획서를 기초로 주택종합계획안을 마련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지체없이 확정된 주택종합계획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시·도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①시·도지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종합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도별 시·도 주택종합계획 및 10년 단위의 시·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 주택종합계획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하며, 연도별 시·도 주택종합계획은 10년 단위의 시·도 주택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1.8>

②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별 시·도 주택종합계획 또는 10년 단위의 시·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도 주택종합계획의 수립기준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할 수 있다

제85조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①시·도 주택종합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 주택법시행령

제9조 (시·도 주택종합계획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0년 단위의 시·도 주택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도 주택종합계획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
2.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 주택시장의 현황 및 전망
3. 주택의 형별·규모별·점유유형별 수요 전망
4. 주거수준의 목표
5. 제8조제2항 각호의 사항(동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10년 단위의 계획을 말한다)에 대한 시·도의 추진계획
6. 저소득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
7.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5조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① 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된다.

③ 위원장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주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도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조례(당해 시·도지사가 발의하는 조례의 경우에 한한다)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주택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⑤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임명·위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의 구성과 위원 등에 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 그 밖에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2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1조 및 제10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부과금액은 별표 13과 같다.

④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1(법 제101조의2 위반의 경우에는 5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부과하는 때에도 과태료부과금액은 500만원(법 제101조의2 위반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취득세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4.3.29>

⑤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